

군축조약 등에 의한 전시 환경의 보호

이 용 호*

I. 서언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이 공업화에 성공한 1960년대를 지나면서, 환경문제는 국제법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다. 이는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급속화 및 대규모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법적 문제로만 안주하는 전통적 관념으로써는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와 수질 및 토양의 오염, 해양오염, 산림의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사막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문제, 유해폐기물의 투기, 유해화학물질문제, 생물의 멸종, 열대림의 훼손 등 다양한 환경관련문제가 국제법적 시각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던 바, 그것이 바로 국제환경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이다.

이러한 법영역은 1972년의 UN인간환경회의(1972.6.5~16) 및 1992년의 UN환경개발회의(1992.6.3~14)를 통해 비약적 발전을 가져 왔지만, 현실적으로 지구환경 문제가 갖는 한계로¹⁾ 인하여,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아무튼 지구촌의 환경파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는 것은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지구환경문제의 한계로서, 첫째 관련국간에 자발적으로 국익을 손상하는 합의를 형성시키기 곤란하다는 점, 장래를 위하여 현재의 이익을 회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지구환경 악화의 과정과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지구환경문제는 그 원인과 영향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문제군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김창조, 「지구환경의 위기」, 세종출판사, 부산, 1992, 48-52면).

전시의 무차별적 환경파괴문제로서, 지난 1990-1991년간의 GULF전에서²⁾ 잘 입증된 것처럼 그 폐허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처럼 무력충돌과정에서 야기되는 무차별적 환경파괴는 별도의 환경파괴기술 내지 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 그 자체가 바로 환경파괴라는 점에서, 전시 환경의 보호문제는 현대 국제법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시 환경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구약성서 申命記(Deuteronomy)의 “적의 도시를 공략하는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과수를 망치지 말라”라는 기록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나,³⁾ 규범적 인식이 명확히 싹튼 것은 베트남전쟁 이후라고 할 것이다. 즉 발달된 군사기술(강우작전 등)의 사용의 결과로 인한 환경의 파괴는 국제 사회로 하여금 무력충돌에서 야기되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베트남전쟁을 통한 환경의 파괴는 국제공동체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후 형성된 일반적 전쟁반대론과 환경문제에 관해 높아진 인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그 결과 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서 환경의 파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2개의 문서, 즉 1976년의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약⁴⁾ 및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양 문서는 첨단기술의 남용으로부터 인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

2) 동 전쟁동안 다양한 환경파괴행위가 존재하였지만, 예컨대 유류의 유출과 관련한 아래의 보고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파괴 정도를 예견할 수 있다. 즉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걸프전 동안 이라크는 약 700-900만 배럴(일부에서는 200-250만 배럴 또는 400만 배럴이라고 주장하기도 함)의 유류를 걸프만으로 유출시켰으며, 또한 약 590개의 유전을 파괴하였던 바, 그 중 508개는 불탔고 나머지 82개에서는 유류가 유출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US Dep't of Defense,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 Final Report to Congress, US Gov'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92, p.624). 이러한 유전에 대한 화재로 인해 500개의 숲을 태우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열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매일 전세계의 총생물 자원의 연소(biomass burning)로 인해 발생하는 총매연의 약 10%의 매연이 매일 배출된다고 추측한 바 있다(Sylvia A. Earle, "Persian Gulf Pollution : Assessing the Damage One Year Later", National Geography, 1992.2, p.122).

3) 신명기 제20장 19절 - 20절에서는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공격하여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휘둘러 그곳의 과일나무를 함부로 찍별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말라.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찌 그 나무들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먹을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너희가 알 것이니. 그런 나무는 찍별하여 너희가 싸우는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쓸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The Jerusalem Bible, Popular Edition, Darton, Longman & Todd Ltd., London, 1974, p.209).

4) 동 협약은 베트남전에 대한 반향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 상원의 95-96차 의회(1978-79년)의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⁵⁾

이처럼 전시 환경의 보호는 상술한 양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 즉, 잠재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하는 협약 내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전시 환경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전시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범체계를 정리한다는 목표하에서 군축조약상의 환경 보호에 관한 제규정 및 전시환경의 보호에 관한 전쟁법상의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제규정을 일반론적 측면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II. 전시 환경보호의 규범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직접적 규범으로는 1977년 5월의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약 및 1977년 12월의 제1추가의정서(특히 동 의정서 제35조와 제55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서만으로써는 전시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에 관한 제규범을 폭넓게 해석하며 아울러 그 집행을 확보함으로써 전시 환경보호를 위한 제규정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서는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직·간접적 문서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5)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155면.

6)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만으로써는 전시 환경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력충돌법의 폭넓은 해석과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라크가 보여 준 일련의 무분별한 행위에서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즉, 이라크의 무분별한 침략 행위 등에 오싹해진 국제사회는 Saddam Hussein과 그의 군대를 환경파괴에 대한 범죄인으로 다루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침해된 규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던 바, 그 결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무력충돌법, 전쟁법의 제원칙까지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침해'는 발견되었지만,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Adam Roberts, "The Law of War and Environmental Damage",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00, p.91).

1. 직접적 규정

상술한 바와 같이 전시 환경보호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는 1949년 8월 12일 자제네바재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추가의정서) 및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 협약(후술)을 들 수 있다.

제1추가의정서에서는⁷⁾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또한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5조 3항), “전투중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손해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손해를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의 금지를 포함한다”(제55조 1항) 및 “보복의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된다”(제55조 2항) 등의 3개 조항을 두고 있다.

2. 간접적 규정

상술한 문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일반적 규정, 즉 전투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제와 민간인 및 그 재산의 폭넓은 보호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전술한 제1추가의정서 내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 협약과 같은 환경관련조약이 안고 있는 흡결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서로서는 ① 세인트 피터스버그(St. Petersburg) 선언⁸⁾, ② 마르텐스조

7) 2001년 4월 11일 프랑스가 동 의정서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1년 현재 동 의정서의 체약국 수는 157개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이란과 이라크 등은 비체약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1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p.659).

8) 동 선언은 1868년 11월 29일과 12월 11일에 각각 서명 및 발효되었다. 400그램 이하의 작열성,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물질을 충전한 발사물의 육해군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 선언에서는 “전쟁 중에 국가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Schindler/Toman(ed), The Law of Armed Conflic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1988, pp.101-102).

항⁹), ③ 1899/1907년의 육전의법규관례에관한협약 및 부속 규칙(일명 헤이그 육전 규칙) 전문¹⁰), 동 육전규칙 제22조¹¹), 제23조 (e)¹²), 제23조 (g), 제28조¹³), 제42조¹⁴), 제47조¹⁵), 제55조, 제56조¹⁶), ④ 제네바제협약¹⁷) 가운데 특히 제4협약¹⁸) 제33조¹⁹), 제53조, 147조²⁰), ⑤ 전시문화재보호에관한헤이그협약 및 전시문화재보호에관한제1의정서²¹), ⑥ 제1추가의정서상의 기타 규정(제35조 1, 동조 2항, 제48조, 제51조 4항, 제51조 5항 (b), 제52조, 제54조 2항, 제56조, 제57조 2항 (a) c), 제61조 9항, 동조 12항, 동조 14항, ⑦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8조 등이다.

-
- 9) 1899년 육전의법규관례에관한협약(제2헤이그협약)의 전문에서는 “보다 완비된 전쟁법규에 관한 법전이 제정될 때까지 채약국은 본 협정에서 채택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 및 교전자는 문명국간에 확립된 관례, 인도법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야기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지배하에 놓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마르텐스 조항이다. 동 조항은, 1899년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의 러시아 대표였던 국제법학자 Fyodor F. Marten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후 1907년의 육전의법규관례에관한협약의 전문,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각각 제63/62/142/158조),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 제1조 및 제2추가의정서 전문, 1980년의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전문에서 각각 강조하고 있다(Ibid., pp.70, 367-594, 605- 718, 179-198).
- 10) 동 전문에서는 군사적인 요구가 허용되는 한 전쟁의 해악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11) 동 제22조에서는 “교전자는 해적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무제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 12) 동 제23조 (e)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13) 동 제28조에서는 습격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 또는 기타 지역에 대한 약탈을 금지하고 있다.
- 14) 동 제42조는 환경의 보호와 잠재적 관련성이 있다.
- 15) 동 제47조에서는 공식적으로 약탈을 금지하고 있다.
- 16) 동 제56조는 환경의 보호와 잠재적 관련성이 있다.
- 17) 제네바제협약이라고 함은 1949년 8월 12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50년 10월 21일 효력을 발생한 4개의 협약을 의미하는 바. 제1협약은 육전에있어서상병자보호에관한협약. 제2협약은 해전에있어서상병자및조난자의보호에관한협약. 제3협약은 포로의대우에관한협약. 제4협약은 민간인보호에관한협약이다(Schindler/Toman, op.cit., pp.373-594).
- 18) 원명칭은 Geneva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이며, 2001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p.649-650).
- 19) 동 협약 제33조에서는 약탈을 금지하고 있다.
- 20) 동 협약 제147조에서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불법 및 자의적인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징발을 금지하고 있다.
- 21) 동 협약 및 의정서는 1954년 5월 14일 서명되었으며 1956년 8월 7일 효력을 발생하였다(Schindler/Toman, op.cit., pp.745-784).

3. 기타 문서들

상술한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갖는 문서를 제외하고, 전시 환경의 보호와 관련지을 수 있는 문서로는 ① 멸종위기애처한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²²⁾ 및 멸종위기애처한종의 보호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 ②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²³⁾, ③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87의 제16항²⁴⁾, ④ 리우선언²⁵⁾ 등이 있다.

III. 군축조약상 환경의 보호

전시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군축조약으로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

- 22) 동 협약은 일명 위성턴협약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1973년 3에 채택되었으며, 1975년 7월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3개의 부속서(제1부속서에서는 멸종 위험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 명시, 제2부속서에서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종을 수록, 제3부속서는 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종을 명시함)를 기준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23)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동 권고적 의견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이 환경의 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법규정을 위반할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동 재판소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법은 핵무기의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의 존중이라는 일반적 국가의무에 비추어, 환경의 존중문제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무력충돌법의 원칙 및 규칙에 합치되도록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paras.29-30, 33).
- 24) “이라크는 …… 쿠웨이트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과 점령의 결과로 야기된 다른 국가, 국민, 법인에 기친 손해,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파괴를 포함하는 모든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에 관해서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라크는 연합군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바, 그것은 쿠웨이트 침공이라는 최초 이라크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U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raq-Kuwait Conflict, 1990-1996, 1996, p.429).
- 25) 동 선언에서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파괴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무력충돌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존중하고 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International Legal Material, Vol. 31, 1992, p.874).

약을 비롯하여 제네바가스의정서, 남극조약,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생물무기협약,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화학무기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군축조약이 전시의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환경보호에 관한 각종 전쟁법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군축조약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 온다든지,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이용금지협약

동 협약에서는²⁶⁾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파괴, 손상 또는 위해를 가하는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심각한 효과를 초래하는 환경변경기술을²⁷⁾ 군사적 또는 기타의 적대적 행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동 협약 제1조 1항),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어떤 국가, 국가구룹 또는 국제기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격려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침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투수단으로서 일정한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즉 환경을 군사적 무기로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즉 동 협약에서의 금지의 대상은 환경을 ‘무기’로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변경기술, 즉 ‘자연계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생물상, 암석권, 수권, 및 대기권을 포함한 지구 또는 외기권의 역학, 구성 또는 구조를 변화

26) 동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은 1976년 12월 10일 UN총회 결의 31/72로 채택되었으며, 1977년 5월 18일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가, 1978년 10월 5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동 협약은 전문을 비롯한 10개의 조항,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Schindler/Toman(ed.), op.cit., pp.163-171). 2001년 현재 동 협약의 체약국 수는 미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한 66개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프랑스 등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658).

27) 본 조약 제2조에서는 환경변경기술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환경변경기술이란 자연계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지구상의 운동, 조직 또는 구조(동식물, 地殼, 수계 및 대기권을 포함), 또는 우주공간의 운동 또는 구조를 변경함을 의미한다./환경변경기술이란 자연계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지구상의 운동, 조직 또는 구조 또는 우주공간의 운동 또는 구조 등을 변경함을 의미한다.

시키는 모든 기술'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²⁸⁾

또한 환경변경이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심각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본 협약의 위반이 되므로, 환경 자체가 파괴나 손해의 객체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이거나', 또는 '심각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에 관해 제네바 군축위원회 회의(Geneva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오늘날 제네바 군축회의의 전신기관)가 1976년 9월 UN총회에 보고한 '본 협정에 관한 양해사항'(Understandings Regarding the Convention)에 의하면, '광범위하거나'(widespread)라고 함은 적어도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의미하며, '장기적이거나'(long-standing)이라 함은 수개월 또는 대략 한 계절의 기간 동안 지속함을 의미하며, 또한 '심각한'(severe)이라고 함은 인간의 생명, 천연 자원 및 경제자원 또는 기타의 자산에 대한 중대하고 현저한 파괴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²⁹⁾

이처럼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의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고 있다 보니, 그 기간에 있어서 수개월 간 또는 한 계절 정도가 아닌 단기간의, 또한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도 수백 평방킬로미터에 이르지 않은 범위에서의 환경변경기술은 군사적 이용이 적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 동 협약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³⁰⁾ 기후의 이용, 휴화산을 활동하게 하는 것, 극지방의 얼음을 용해시키는 것, 인공가뭄의 상태 등 환경변경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아군에게는 무익하면서 적군에게만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

28) 환경변경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 제네바 군축위원회 회의(Geneva 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오늘날 제네바 군축회의의 전신기관)가 1976년 9월 UN총회에 보고한 '본 협정에 관한 양해사항'(Understandings Regarding the Convention)에 의하면, 지진, 해일, 어느 지역의 생태계 파괴, 기상형태의 변경(예컨대 구름, 각종 희오리 바람을 수반하는 폭풍 등을 포함) 및 기후형태(이를테면 춥거나 더운 기후를 의미함)의 변경을 비롯한 해류, 오존층, 전리층(state of ionosphere)의 변경 등을 들고 있다(Schindler/Toman, op.cit., p.168).

29) Ibid., pp.168-169.

30) 정운장, 「국제인도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301-311면.

2. 제네바가스의정서

동 의정서는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유사한 모든 액체, 고체 또는 장치물의 전시사용뿐 아니라 전투수단으로서 생물학적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³¹⁾ 동 의정서는 잠재적으로 환경파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다방면에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제초제를 포함하는 화학무기)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무튼 동 의정서는 환경에 치명적 해를 가져오는 화학적 전쟁수단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측면은 실제로 약간의 무력충돌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즉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동안의 많은 교전국과 1990-1991년간의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³²⁾ 따라서 화학무기의 선제사용에 대한 반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동 의정서 체제로 인해³³⁾, 결과적으로 전시 환경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 의정서는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유사한 모든 액체, 고체 또는 장치물의 전시사용뿐 아니라 전투수단으로서 생물학적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³⁴⁾ 동 의정서

31)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화학무기의 혜약(동 대전기간동안 화학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약 13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을 경험한 바 있는 국제사회는 생물화학무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 바, 그 결실이 바로 동 의정서이다. 동 의정서는 1925년 6월 17일에 서명, 1928년 2월 8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3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UN, *The United Nations and Disarmament : A short history*, UN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New York, 1988, p.81 ; 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648).

32) Adam Roberts, *op.cit.*, p.53.

33) 동 의정서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촉소 30여 개국이 유보를 불이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동 의정서상에 내포된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사용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유보를 불임으로써, 다소 그 실효성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된다(Malcolm N. Shaw,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St.Martin's Press, New York, p.15).

34)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화학무기의 혜약(동 대전기간동안 화학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약 13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을 경험한 바 있는 국제사회는 생물화학무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 바, 그 결실이 바로 동 의정서이다. 동 의정서는 1925년 6월 17일에 서명, 1928년 2월 8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영국 등 13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The United Nations and Disarmament : A short history, *supra note 31*, p.81 : SIPRI Yearbook 2001).

는 잠재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함으로써(다양하게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제초제를 포함하는 화학무기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무튼 동 의정서는 환경에 치명적 해를 가져오는 화학적 전쟁수단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측면은 실제로 약간의 무력충돌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즉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동안의 많은 교전국과 1990-1991년간의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복의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³⁵⁾ 따라서 화학무기의 선제사용에 대한 반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동 의정서 체제로 인해³⁶⁾, 결과적으로 전시 환경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남극조약

1959년 12월 1일에 체결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³⁷⁾ 남극지역의 비핵화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으로서,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남극에서의 모든 군사기지·요새의 설치, 군사작전의 수행 및 무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격을 띠는 모든 조치의 금지³⁸⁾,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 조약에서 군사행동과 핵실험 등을 금지함으로써, 남극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것이다.³⁹⁾ 나아가 남극지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남극조약에 대한환경적보호를위한의정서(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일명 1991년 마드리드의정서)가 1998년 1월 14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supra note 7, p.648).

35) Adam Roberts, op.cit., p.53.

36) 동 의정서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최소 30여 개국이 유보를 불이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동 의정서상에 내포된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사용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유보를 불임으로써, 다소 그 실효성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된다(Malcolm N. Shaw, op.cit., p.15).

37) 동 조약은 1961년 6월 23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체약국의 수는 44개국이다.

38) 예외적으로 과학적 연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대 요원 또는 군사장비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동 조약 제1조 2항).

39) Adam Roberts, op.cit., p.71.

4.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1963년 8월에 체결된 동 조약은⁴⁰⁾ 핵무기 통제분야에서 최초로 채택된 일반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와 대기 및 해양에서의 환경오염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¹⁾

특히 동 조약의 전문에서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환경의 혼란을 중단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양립하는 협상을 계속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 조약은 1996년에 체결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의해 보완되어져 오고 있다.

5. 생물무기협약

1972년 4월 10일에 체결된 동 조약은⁴²⁾ 군비축소를 위한 진정한 조치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생물 및 독소 무기, 관련 무기와 장비 또는 운반 수단의 전면적 금지(개발, 생산, 비축 또는 획득, 보유)와 그러한 무기들의 파괴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생물무기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협약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 걸친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특정 재래식무기의⁴³⁾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UN전권회의가 1979년 9월 및 1980년 9월 - 10월에 각각 개최되었으며, 1980년 10월 10일 “특정재래식무기규제 협약” 및 이것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3개의 부속의정서가 채택되었다.⁴⁴⁾

40) 동 조약은 1963년 10월 10일에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체약국의 수는 125 개국이다(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651).

41) Adam Roberts, *op.cit.*, p.71.

42) 동 조약은 1975년 3월 26일에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체약국의 수는 144개국이다(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657).

43) 특정 재래식무기라 함은 재래식무기 중에서도 그 성질상 특히 불필요한 고통 또는 과다한 상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무기를 말한다.

44) 동 조약은 1981년 4월 10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1983년 12월 2일 발효되었다.

그후 “동 협약에 대한 제1차 재검토회의”(the first Review Conference of the 1980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제1회기(1995.9.25-10.10, Vienna)를 통해, 1995년 10월 13일 새로운 제4부속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동 재검토회의의 제2·3회기(1996.1.15-1.19 및 1996.4.22-5.3, Geneva)를⁴⁵⁾ 통해, 1996년 5월 3일 제2부속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이 채택되었다.⁴⁶⁾ 동 협약은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직접적으로 사용의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 무기에 관해서는 동 협약에 부속된 4개의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탐지불능성쇄편무기의사용금지의정서(Protocol on Non-Detectable Fragments, 1980년, Protocol I), 지뢰및위장성무기의사용규제에관한의정서(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1980년, Protocol II), 소이성무기의사용제한의정서(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1980년, Protocol III), 실명성레이저무기의정서"(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1995년, Protocol IV) 등이다.

동 협약의 전문에서는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의도된 전투수단 및 방법의 채택은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은 환경의 관점에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동 협약상 직접적인 환경관련 규정으로서는 제3의정서 제2조 4항 및 제2개정의정서를 들 수 있다. 먼저 제3의정서 제2조 4항에서는 “삼림과 식물군락은 그것들이 전투원 또는 다른 군사목표를 위장, 엄폐, 엄호하는데 이용되거나 그 자체로서 군사목표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이성 무기에 대한 공격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개정의정서에서는 무차별적인 지뢰사용의 금지(제3조 8항), 지뢰 매설지의 제거지원(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만으로써는 직접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Sinai나 한바도의 비무장지대의 경우처럼, 자연환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지만 자연에는 인간의 파괴로부터의 유예가 보장된 것이므로, 오히려 자연의 보호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5) 동 회기에서는 대인지뢰문제와 제2부속의정서의 개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Louise Doswald-Beck, "New 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No.312, 19965-6, p.272).

46) Ibid.

아무튼 동 협약은 잠재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함으로써(다양하게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지뢰, 부비트랩, 소이탄, 레이저무기 등을 규제함으로써), 사실상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7. 화학무기협약

동 협약은 1993년 1월 13일에 체결되었으며⁴⁷⁾, 화학무기의 보유의 금지와 사용의 금지 및 새로운 화학무기의 개발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학무기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협약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 걸친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대인지뢰금지협약

1993년 UN총회는 “대인지뢰의 수출정지결의안(UNGA Res. 48/75K)”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996년 5월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의 제2의정서(지뢰 등의 일반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사용을 금지)를 개정(전술)하여 대인지뢰를 포함한 지뢰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의정서만으로는 지뢰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국제지뢰철폐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을 비롯한 NGO들과 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일련의 국가들의 지속적 지뢰철폐노력으로 인하여 마침내 1997년 9월 18일 Oslo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되었다.⁴⁸⁾

47) 동 협약은 1997년 4월 29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2001년 현재 체약국의 수는 141개국이다(SIPRI Yearbook 2001, supra note 7, p.665).

48) 대인지뢰금지협약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두된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국제여론을 바탕으로, Ottawa회의(1996.10.3 - 5)·동경회의(1997.3)·Brussel회의(1997.6) 등의 일련의 회의 및 1997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Oslo회의에서의 최종 토의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그후 동 협약은 1997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Ottawa에서 그리고 동년 12월 5일에는 New York의 UN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98년 12월 현재 미발효(발효요건은 40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개월 후)상태이다(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8, p.597).

동 협약에서는 모든 대인지뢰의 개발, 생산, 비축, 취득, 보유, 이전 및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1항).

동 협약은 잠재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함으로써(다양하게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지뢰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 협약의 챕터과정에서 군사강대국의 일부가 협약체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탈한 것은 동 협약의 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동 협약에 많은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강대국 또는 지뢰생산국이 불참함으로써 실질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정치적 성격의 국제협약이 될 가능성성이 있다는 점이다.⁴⁹⁾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예외적 상황(즉 북한의 호전적 군사정책이라는 특수성, 수도방위의 절대성 및 지뢰의 사용을 통한 남침의 효과적 차단과 반격시간의 확보라는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뢰사용의 전면금지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예외적 지역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이 예외를 不許하는 전면적 금지규정을 두며 또한 유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⁵⁰⁾

IV. 전쟁법상의 기본원칙에 의한 환경의 보호

전쟁법상의 기본원칙은 모두 전시의 환경파괴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쟁법상의 기본원칙인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및 인도성의 원칙 등은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첫째 비례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란 기대한 군사적 이익과 비례하지 않는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⁵¹⁾ 다시 말해 적법적인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우발적)으로

49) 임덕규, “대인지뢰의 국제법적 규제와 한국의 현실”,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2호, 1997.12, 168면.

50) 앞의 논문, 173면.

51) Michael N.Schmitt, "War and the environment : fault lines in the prescriptive

발생할 민간피해와 소기의 군사적 이익을 較量하여, 민간피해가 더욱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무차별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 원칙은 민간주민 및 민간물자에 대한 부수적 손해와 군사적 이익과를 어떻게 교량하는가 하는 한계가 있다.⁵²⁾

둘째 구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이란 전투원과 민간인 및 군사물자와 민간물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후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이다.⁵³⁾

셋째 필요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Necessity)이란 교전자는, 무력충돌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과 물자를 사용하여 적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굴복시키는데 요구되는 정도의 무력만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⁵⁴⁾,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파괴행동 즉, 무분별한 파괴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⁵⁵⁾

넷째 인도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Humanity)이란 인간의 고통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비인도적인 전투수단 및 방법을 규제하는 원칙으로서⁵⁶⁾,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과 물자로써 적을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굴복시키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 어떠한 무력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⁵⁷⁾

그밖에도 중립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Neutrality) 또는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과 같은 보조적 원칙도 고의적이거나 또는 우발적인 환경파괴를 야기한 특별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어

이상과 같이 국제법상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군축조약상의 제규정 및 전쟁법상의 제원칙을 모두 정리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시 환경의 보호에 관한 직접적 규

landscape",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00, p.103).

52) 정운장, 앞의 책, 328-329면.

53) 위의 책, 256면.

54) Adam Roberts, op.cit., pp.50-51.

55) Michael N.Schmitt, op.cit., p.101.

56) *Ibid*.

57) Adam Roberts, op.cit., p.51.

법으로는 제1추가의정서(제35조 3항과 제55조)와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이용금지협약이, 그리고 간접적 규범으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선언을 비롯한 마르텐스조항, 육전의 법규관례에관한협약 및 부속 규칙, 제네바가스의정서, 제네바제협약, 전시문화재보호에 관한해이그협약, 제1추가의정서상의 기타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규제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각종 군축조약들, 전쟁법상의 제원칙, CITES, ESA,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87, 리우선언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군축조약상의 제규정과 전쟁법상의 제원칙이 전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환경보호에 관한 각종 전쟁법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전술한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직접적 규범조차도 특정 형태의 전투방법과 수단을 금지하는데 지나지 않는, 즉 구체적으로는 특정 형태의 전투수단과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환경의 보호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시 환경의 보호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직접적 규범조차도 효과적인 환경보호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군축조약상의 제규정 내지 전쟁법상의 제원칙에 의한 환경의 보호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반적인 환경훼손은 심각한 지경이며, 나아가 전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990-1991년 간의 걸프전에서 약 700-900만 배럴의 유류가 걸프만으로 유출되었으며, 유전에 대한 방화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전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잘 지적해 준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시 환경파괴를 예방 내지 감소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의 정립을 위한 논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물론 효과적인 환경의 보호 위해서는 실효적인 이행수단의 강구 등 동시에 추구해야 할 바가 다방면에 요청되겠지만, 우선 전시 환경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규법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실질적인 규법의 정립이전에 상술한 것과 같은 다양한 관련 규정을 통해, 다시말해 기존의 전쟁법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또는 관련성이 있는 문서를 환경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전시 환경의 보호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